

생산적합성조사 및 품질검사 수수료(제31조의2제2호 관련)

1. 수수료 금액

가. 신청수수료

| 항 목 | 건수 | 수수료(원)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-|
| ○ 품질검사 신청(생산적합성조사, 잔류농약검사) | 1 | 50,000 |

나. 품질검사 심사원의 출장비

- 1) 「공무원여비규정」에 따른 5급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, 품질검사 신청인이 이를 부담한다.
- 2) 출장기간은 품질검사 심사에 소요되는 1일과 목적지까지 왕복에 필요한 기간을 적용하고, 출장인원은 2명 이하를 원칙으로 하되, 시료채취 기간이 더 소요되는 경우에는 실제 심사에 소요된 일수를 적용할 수 있다.

다. 검사수수료

| 구 분 | 검사항목 | 단 위 | 1성분당 수수료(원) |
|------|--|-----|----------------|
| 잔류농약 | ○ 클로로피리포스, 엔도설판, DDT, 프로시미돈, 다이아지논, 카벤다짐 등. 다만, 1회 다성분 동시분석이 가능한 농약은 1성분으로 인정한다. | 1성분 | 81,400 |

2. 수수료 납부방법

수수료 납부방법은 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한다.